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0-27호  
2020. 4. 7.(화)

## 차 례

###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간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352호) .. 1

공  
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의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다.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지역건강협의체의 위원의 임기,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지역건강협의체의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 4. 2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대덕구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3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석봉동) 대덕구보건소(전화 : 042-608-4472, FAX : 042-608-3853, E-Mail: annamint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자 김은혜(전화 : 042-608-44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 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공공 및 민간단체, 주민건강조 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스스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센터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 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교육훈련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협의회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4조 및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8.10.1.>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8조 관련)**

명 칭	주 소	관 할 구 역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 (석봉동)	대덕구 일원
대전광역시 대덕구건강생활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87, 5층 (법동)	대덕구 일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치매안심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87, 3층 (법동)	대덕구 일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장동보건진료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디로15번길 63 (장동)	장동 일원

※ 장동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은 법정동임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운영 매뉴얼」

■ 지역건강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 기능

지역건강협의체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역건강 거버넌스로서 일종의 이사회로서의 기능을 가짐

○ 구성원

주민건강조직 대표자, 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기관들의 대표자들

※ 지역건강협의체를 구성하는 총 인원 중 최소 50%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이 맞도록 함

○ 의장

## 주민건강조직 대표자

### ○ 간사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1인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센터장이 공동으로 맡으면서 실무적인 작업 진행

#### -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역할

: 지역건강협의체 운영 및 내부 회의와 관련된 행정과 실무 총괄.

또한 협의체에 참여한 구성원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함

#### - 주민건강조직 간사의 역할

: 지역건강협의체 내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수집하고 이를 지역건강협의체의 안건으로 만드는 역할을 함. 뿐만 아니라 지역건강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주민건강조직과 다른 기관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생기는 경우 주민건강조직을 대표하여 이를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 지역건강협의체 운영의 원칙

- 지역건강협의체는 주민건강조직이 구성된 후에 구축  
단, 지역건강협의체가 먼저 구성되는 경우에는 주민건강조직 구성 활동을 우선 시행함
- 구체적인 운영 규정 필요
- 지역건강협의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과 단체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
- 최소 분기별 운영
- 일상적으로 협력해야 할 구체적인 영역이 없는 기관 및 단체는 지역건강

협의체에 참여 불가

-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조직은 반드시 참여 필요
- 간사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1인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센터장이 공동 수행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 건 소	
담 당 자	김 은 혜
연 락 처	(042) 608 - 4472